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8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9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0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7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명기)

가. 제안이유

- 조례 제정의 근거 규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하고, 민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요건 명확화와 개정에 따른 법적 공백 방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 조례 설치 목적인 법률 조항을(근거규정) 정비
- 지도위원 결격사유 정비(안 제3조)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지도위원 자격 결격사유 명료화
- 기존 금치산자·한정치산자에 대한 결격사유 관리상 공백이 발생하므로 경과 규정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제2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27조”로,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을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 “위촉절차등”을
“위촉절차 등”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될수”를 “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
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